

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	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	
사무소 소재지				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 립 청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없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